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42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윤준병 · 이주희 · 김 윤
서미화 · 김 현 · 박희승
이정문 · 이춘석 · 박홍배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
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음
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
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
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음주 운
항자 또는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적용
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
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조종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을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로서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①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가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가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

-----.

1. · 2. (현행과 같음)
3. -----
-----총톤수 5
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
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
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5. ~ 7. (생략)

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
구를 조종하게 한 자로서 관
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한 자

5. ~ 7. (현행과 같음)